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9.5.14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9-07-3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건축 심의			
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
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			
〈 건축 분야 〉			
□ 건축계획			
○ 106동 최상층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승강기 사용시 공동주택 세대의 피해가 없도록 동선계획을 개선하고, 지상1층에 주민공동시설 전용 승강기 대기를 위한 공용홀(또는 방풍실) 설치 바람.			
□ 건축구조			
○ 사업부지가 한강변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지질조사를 추가하고, 35층 주동 기초가 퇴적층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파일기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.(구조심의시 관련자료 제시 바람)			
〈 공통사항 〉			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.			
가. 녹색건축인증 우수(그린2) 등급 적용			
나.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주거 1등급 적용			
다.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주거 1.3%이상 적용			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.			
- 계속 -			

2019.5.14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9.5.14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9-07-3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건축 심의 〈 공통사항 〉(계속)			
3. 「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」 2.적용기준 나.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(초미세먼지 포함)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.			
4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			
5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			
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			
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			
6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			

2019.5.14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